

# 재범 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 건립 본격 추진

## 보편적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재단법인 진각미란다 이용도 이사장

재범 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 건립 추진은 불국정토 건설의 장을 여는 자비와 희망의 메세지!

부처님께서 평생 길에서 맨발로 법을 전했듯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재소자들을 부처님 연기법의 선근으로 교화하고, 다시는 악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출소자에게도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서 새로운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화합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촉진하고 있다. 교도소의 과밀화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대 자유사상과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교정 포교에 새로운 장을 펴나가고자 불교계 민영 교도소 건립을 위하여 오래 전 재단설립과 함께 필요한 재원 마련과 적절한 부지 선정 등 민정을 준비를 거쳐 이제 민영교도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진각미란다 이용도 이사장을 만나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설립 배경 및 추진방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 과거에 묶여 “범죄학교” 된 속명의 교도소 개선안 마련되어야

정부의 교도소 민영화 방침에 따라 기독교에 이어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을 추진하여온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교도소는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보니 결국은 그자리가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고,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재범률도 7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대 전후의 폐교도 대다수가 감방에서 만나 범죄 수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 출소한 이후 몰려다니는 이른바 ‘감방동기생’ 이 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보다 나은 교정행정과 기술 및 교육 등으로 수감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준비로 수감 시에는 기업체와 상호 유호-동력 체결을 통해 기술 습득 및 기본생활 자금 마련으로 출소 후 자립의지를 키우 재범 없는 교정교화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 경험 자체가 사회 부적격자라는 낙인이 찍어 출소자의 사회정착이 힘들다면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범죄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사실은 교도행정이 교정행정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형자의 교정교화의 성공으로 나타나는 재범률의 축소는 반대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재범률의 수치는 아직도 과거의 ‘형무소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교도소에서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수형자들의 교화자립에 중점을 두고, 불교적 마음수련과 사회 적응도를 온전한 사회 진출을 돕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는 이 이사장은 양질에 수용생활을 완성하기 위하여 명상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기초적이 마음수련으로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응도를 높이고, 사회기초 정착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여 기술적 종교적 인성을 높여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는 그 운영에 있어서 민간 경영 기법과 회계 관리 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수용자 관리, 교화, 상담, 교육 훈련 등에서 민간의 탄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위임하고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CCA와 WCC를 모델로 한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재범 없는 민영교정 행정 마련”

이 이사장은 “범죄재범의 제로화 방안 -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미국의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와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를 모델로 하여 수용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금해 출소 후 사회정착 기초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조된 기술력으로 사외적 생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을 앞선해 계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조금도 범죄적 마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며 본 시설의 운영방향이 제2, 제3의 생산성을 이루는 민영교도소를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면 수용인 들이 늘고 있는 인력인 생산성을 추구하는 수용생활로 이끌어 사회의 기초적 성장생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장은 “범죄자라 외면하지 않고 가족과 형제처럼 따뜻하게 받아줄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첫 걸음이다”라며 사업추진 목적을 밝혔다.

### 국내 첫 민간교도소 경계여주 ‘소망교도소’의 모범사례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는 사회적 비용을 낮춘 효과를 인정받아 민간교도소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이지만 구영교도소에 비해 10%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범을 완화한 사회간접비용과 운영비 절감효과를 합치면 지금까지 약 1,100억 원의 절감효과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너무 좋은 환경이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소망교도소 소장은 “재소자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불만만 키운다면 교도소는 범죄 수법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키우는 범죄학교밖에 되지 않는다며 진정한 교화가 이뤄지는 교도소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불교 미란다 민영교도소’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방안을 제도화하여 과밀도 형식에 수용생활과 비생산적 운영 방안을 확립 넘치는 생산적 수용 시설로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며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방안을 프로그램화 하는 한편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포교의 문을 열고 어둠이 아닌 밝음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 자신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장학재단 운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 전개

우리의 현실은 날로 발전하는 물질문명과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정신문화가 파괴되고 도덕적 해이됨에 따라 규범이 흐트러지고 가치관이나 도덕정신의 결핍으로 각종범죄와 무질서,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이사장은 사회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새로운 정신문화 창조와 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말만 바꾼 죄를 충실히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 충효대상, 시민대상, 위대한 한국인 대상 등 진행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함으로써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경사변수기·봉암변진설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충·효·예를 모범히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역사적 고취

와 문화계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불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종교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한다. “현 시대의 종교의 타락과 시대정신의 상실은 세상을 더 황폐화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종교교유의 정신적 가치를 회복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도소는 범죄학이 아닌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참회의 현장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또다른 수행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정포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불교계의 한 차원 높은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 I. 민영교도소의 의의

##### 1. 민영교도소의 역사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민영교도소는 크게 미국식과 브라질식으로 구분되어진다. 미국식의 민영교도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출발한 기업형태이다. 미국의 민영교도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CCA와 WCC는 영국과 호주 등지에 자사 망을 갖춘 다국적 교정회사로 미국에서는 민영교도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불리는 사업이다. 브라질식의 민영교도소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의 대표적 모델로서 ‘휴미타타 종교교도소’로 1984년 설립되었다. 종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교도소는 재범률이 4%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브라질형 교도소를 모델로 하고 있다.

##### 2. 민영교도소의 추진 배경

##### 가. 교정수용의 확대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촉진하고 있다. 교도소의 과밀화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약 47개 교정시설의 정원이 4만 8000여명인데 반해 수용자의 수는 약 6만 여명 이 넘으로써 수용밀도 125%의 과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교도관의 수 또한 1만 2000여 명에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 1명당 수용자의 수는 1대 5.1정도이다.(이 수치는 행정 등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수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수용자를 관리하는 현장의 교도관의 숫자만으로 계산한다면 1대 5.1의 수치를 받는 교도관은 거의 없다.)

##### 나. 교정경비의 확대

수용인원의 증가는 교정경비의 증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더욱이 IMF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미리 책정된 예산으로 증가하는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낮게 하고 있다. 사실 교도소 한 개를 새로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350억~500억원이 드는 현실과 약 500명의 수용기준의 구급시설에 드는 일년 예산이 약 50억~60억이 넘는 현실에서 민영교도소를 통한 민간 자본의 흡수는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 다. 교정행정의 실패

지금의 교정이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적 여론과 더불어 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재통합이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재통합이론이란 범죄자와 범죄를 유발시킨 사회까지도 서로 상호간에 개선되도록 하는 이론으로 최근 강력해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이론의 일환으로 복지단체나 민간분야의 교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II.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

1995년 전부터 시작된 기독교 교도소 움직임은 2001년 재단법인 ‘아가페’가 출범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또한 경기도 여주에 6만여 평의 목장 부지를 구입해 2006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교도소는 형기 1~7년 사이 초, 재범자 500여명의 남자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가페측이 교도소 건설과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을 맡게 되며 500여명 수용규모의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약 90%선인 연간 45억~50억원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의 구성은 법무부가 7명의 감독관을 파견하고 100여명의 직원과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할 것이며 재범률을 4~5%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임 강급식 법무부 장관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유보적 인입장을 취해 온 것과는 달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민영교도소 건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타 종교계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II. 민영교도소 운영 관련한 쟁점

##### 1. 교정행정의 전문성 문제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논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재범률일 것이다. 수형자의 교정교

화의 성공으로 나타나는 재범률의 축소와 반대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재범률의 수치는 현 교정행정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교정행정의 전문성에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도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일반적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로 인한 수용인원의 증가는 교도관에게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 수용자들을 그저 지켜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마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도소를 범죄를 학습하는 곳으로써 ‘학교’ 등으로 칭하고 있으나 사회에 널리 보급된 인터넷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학습이 구급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인권의 구분별한 주장으로 인하여 강력, 특이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교화권마저도 적용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에 단지 수용될 당시의 상태로 출소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도 인한 교도관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교정의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애써 무시한 채 교정교화의 실패의 원인을 모두 교도관에 돌리고 그 대안으로써 민영교도소의 설립만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2. 형법권의 위임 문제

사회통제나 형법권은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써 교정기관은 국가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형법집행권이 민간에 의해서 행사될 때에는 범죄국가의 원칙이 무너지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범죄자를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한 우리의 현실에서 본다면 이는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교도관은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국민을 대신해서 범죄자들의 형법을 집행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공무원이다. 범죄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차원의 공적인 감정을 지녀 체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들을 관리한다면 분명 어느 한쪽의 감정에 치우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민영교도소의 직권과 수감자의 위법적 유사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 3. 교정행정의 일관성 저해 문제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구급시설에 수용할 때 그 범죄자의 연령, 죄질, 범수,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약 47개소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 모호성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용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한 수형자 특정종교에서 운영하는 구급시설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그 종교를 신봉하므로 그 시설의 수용을 원하면서 생기는 행정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종교가 운영하는 구급시설에 수용되고 보니 종교적 참여를 강조하여 싫증이 난 수감자가 본래의 시설로 수용을 원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특정 종교운영의 구급시설 수용에 부적합이라고 판명된 자가 법원에 그 수용에 부당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정 종교운영의 구급시설의 수감자가 다른 시설로 이감을 원했을 때 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종교적 자유, 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모든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이 모든 행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국가 지원 예산 범위에 따른 문제

사실 교정의 민영화는 사회의 법체계의 큰 변화임에도 국민적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민영교도소의 설립의 정당성의 하나로 현 교정시스템의 잘못만이 부각되고 나머지의 문제들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민영교도소의 운영 예산 문제이다. 정부는 현 구급시설의 500여 명의 수용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약 90% 이상을 민영교도소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그 규모는 연간 45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운영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지원 받는 시설이 민간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패한 교정행정의 대안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가 국민적 관심사를 끌게 된다면 이 예산 지원의 문제는 국민에 의해서 성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뻔한 것이다.

##### 5. 종교적 침해의 문제

민영교도소에 수감될 자들의 조건엔 ‘특정 종교를 믿는 자’란 규정은 없다. 이는 국가에서 시설운영 예산을 지원 받는 시설이 특정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특정 종교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이런 규정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용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형자의 종교적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 수용기준에 합당하여 수용되었으나 종교적으로 타 종교를 신봉하는 수용자의 종교적 침해, 종교는 신과 당사자의 내면의 대화임에도 시설운영 주체의 운영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더욱 깊은 종교적 신념의 강화를 강요함으로써 생기는 종교적 침해, 시설운영의 주체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자신이 그 시설에 수용될 것을 원함에도 탈락된 수형자의 심리적 박탈감도 종교적 침해일 것이다. 국가운영 시설에서도 종교가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종교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음은 개인이 갖는 종교적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6. 민영교도소에 대한 시민의 태도

##### 가. 지역이기주의

벌써 민영교도소 설립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도소가 혐오 시설로 인식된 상황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갈수록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수용시설의 현대화, 증대의 요구로 많은 수용시설이 필요한 사정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핵 폐기장의 설립 과정에서 보았듯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어붙이는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주었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나. 인권단체 등의 문제 제기

민중투쟁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이유로 ‘형법 집행권이 민간에 의해 행사될 때에는 범죄자가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민영교도소 실패를 예로 들면서 자금 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의 실의성,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등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으며 불교계 등의 타종교단체는 특정 종교 단체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지는 법 제정 등에 반대를 해왔다.

##### 7. 종교적 교정교화의 측정 문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라면 적법한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회 곳곳에 있는 종교 시설 등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적법한 기관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점을 인식한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교 구급시설도 그런 곳으로 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곳이라면 그 세금으로 인한 사업의 실적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 운영에 투자되는 자금은 유형의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지만 수감자의 교정교화에 투자된 자금을 유형의 자료로 산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출소자의 숫자의 자료화로 감파의 성공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신과 당사자의 내면의 대화인 종교적 깊이를 어떤 근거로써 자료를 산출하는데 가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편적 객관성 보다는 특정 종교의 교리라는 주관적 관점으로 호를 기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힘에 의해서 수감자를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면 대상자를 흥취, 강력법, 폭력법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민영교도소의 수감 대상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사실 교정교화가 필요한 사람 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처음 실행되는 것이어서 노후가 없거나 그렇지한 노후가 쌓이면 수용 대상의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어떠한 실험적 모델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종교적 신념도 인간 그 자체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종교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 8. 기타 문제

위에서 지적한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노동력 착취문제, 국가지원금의 외의 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의 공개와 예산 확보의 정형화, 국영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민영교도소의 직원의 노조, 임금 관련한 파업, 무기 사용 등 많은 논란들이 제기 되고 있다.

##### 결론

위의 글에서 교정의 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서술해 보았다. 이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수사 관행 및 사법체계의 변화

전체 수용자 중 미결수가 40% 정도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는 비율이 25%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적 위주의 수사관행은 마구잡이식 구속수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사법부도 보석제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과실법, 초범, 생계형범죄, 학물관련 사범 등의 범죄자에게는 각각의 범죄에 특성에 맞는 신중한 선고를 해야 함에도 양형의 깊고 짧음으로 판결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전과자와 예비 범죄군을 양성하고 이로 인해 교정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교정의 실패는 교정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둘째, 교정관련 법률 체계의 완비

교정은 범죄자를 구급, 격리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교정관련 법체계는 부끄러운 정도로 허술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과히 폭발적으로 향상된 국민의 인권의식은 교정의 인권 사각지대만 모범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교정의 근간을 이루는 모범인 행정법마저도 그 자의성과 임의성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늦기 전에 교정 법률의 체계를 갖추는 일은 중요하다. 인권의 신장에 맞춘 법률의 제정은 과거의 구태 연한 관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이는 교정의 민영화를 실시하기 전에 기반조성도 정비해야 할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셋째, 교정의 학문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교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정학은 형법의 범주에 포함된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학문연구의 미비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양상에 대해서 각각의 범죄자 처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범죄의 수법에 따른 수사기법이 제시되고 법원이 그 판단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교정에 있어서 교화권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단언마저도 생소하게 생각하게 되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 교정에 중요한 것은 형법 집행권과 교도관 교화권의 학문적 정확한 정의와 그것을 위한 행동 지침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지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언으로 정의되고 있는 현 상태의 교정에서 어떠한 처방도 과거와 같은 답습을 할 것이다.

##### 넷째, 교정의 개방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교정행정은 교정의 실패를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단연 선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대한 오류로써 지금 우리 교정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탈태원 조직에 민간의 참여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국민들에게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한 TV프로그램에서 수형자에게 교도관인 당사자와 내면의 대화인 종교적 깊이를 어떤 근거로써 자료를 산출하는데 가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편적 객관성 보다는 특정 종교의 교리라는 주관적 관점으로 호를 기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힘에 의해서 수감자를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면 대상자를 흥취, 강력법, 폭력법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민영교도소의 수감 대상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사실 교정교화가 필요한 사람 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처음 실행되는 것이어서 노후가 없거나 그렇지한 노후가 쌓이면 수용 대상의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어떠한 실험적 모델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종교적 신념도 인간 그 자체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종교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은 편의의 행사소송법이다. 즉 수사, 공소, 재판, 집행에 이루어진 마지막 부분의 집행으로 이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것이다. 비록 사회적 무관심으로 크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이 국민을 위해서 실행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왜 이런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지를 알리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정의 시스템 정비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절차와 거의 생략했다.(국민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함에도)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의해서 밀실에서 토의가 행해지고 일반적으로 밀려붙이기 식의 교정의 민영화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교정의 민영화가 사회재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실행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